

「평창군 읍·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0. 30(금) 평창군수(주민생활지원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11. 20(금)

다. 상정일자 : 2015. 12. 7(월) 제21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)

-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를 법체계에 맞도록 수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물의 사용 및 수익처분은 허가사항에 해당되므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법률용어를 법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
-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읍·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읍·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읍·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 제목“(사용신고)”를“(사용허가)”로 하고, 제16조제1항 후단 중 “신고사항”을 “허가사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용신고 수리하여야”를 “사용 허가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용신고신청”을 “사용허가신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사용허가 시에는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을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5항 중 “사용신고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“(신고의 취소등)”을“(허가의 취소 등)”으로 하고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신고”를 “사용허가”로, “신고”를 “허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용신고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용신고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 후 사용일 전일까지 이를 징수한다.

제20조제3호 중 “사용신고수리”를 “사용허가”로, “신고하여 그 신고수리”를 “신청하여 그 허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